



질병관리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(수정)

1. 관 련

- 가. 제7차 신종변이 대응 범부처 TF회의('22.1.28.) 및 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('22.1.27.)
 나.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-6280('21.12.29.)호
 다.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-48('22.1.4)호

2. 우리 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, **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해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(~'22.2.3.)** 중에 있습니다.

3.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·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**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**하오니, **시·군·구 및 재외공관** 등 현장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내 용

구 분	방역조치	
	현 행	변 경
해외입국자 격리기간	10일 ※ 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은자가격리,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	7일 ※ 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은자가격리,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
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	격리면제 중단 ※모든 국가/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 가로 지정	격리면제 중단 유지 ※모든 국가/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 가로 지정 연장
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제한	직항편 운항 중단	직항편 운항 재개
아프리카 11개국 出發·체류·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제한	입국 불허(금지)	입국 허용
아프리카 11개국 出發·체류·경유가 확인된 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 격리강화	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 시설에서 10일 격리	임시시설 격리·검사 해제 ※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(7일격리, PCR 3회 등)
아프리카 11개국 外 아프리카 出發·체류 ·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강화	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검사 (승무원 포함)	임시시설 검사 해제 ※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(7일격리, PCR 3회 등)

* 가나, 잠비아, 남아공, 나미비아, 모잠비크, 레소토, 말라위, 보츠와나, 에스와티니, 짐바브웨, 나이지리아

※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

나. 추가사항

-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(미소지자 포함), 5일 시설비용 자부담 + 2일 자가격리 실시
-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

다. 적용시기 : '22. 2. 4. 0시 입국자부터

- 단,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(8일차 12시)에 격리해제 가능. 끝.

질 병 관 리 청 장

수신자 관계부처(기관)장, 질병대응센터장, 국립검역소장, 광역자치단체장 등

검역정책과 주무관 **김상연** 행정사무관 **박진욱** 검역정책과장 **김주심** 2022.1.28.

협조자 격리관리팀장 **민선녀**

시행 검역정책과-593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질병관리청 / <http://kdca.go.kr>

전화번호 043-719-9209 팩스번호 043-719-9249 / iter2ouf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질병정보 공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